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8. 29.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57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김형곤 의원 등 8인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김형곤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을 구체화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소형 음식점(연면적 200㎡ 미만)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청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판매 이윤’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 이윤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통일된 종량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올바른 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배출요령 권고안 적용(안 제13조제1항)
- ‘소형음식점’에 대한 기준을 공동주택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15조제4항)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포함) 판매소 이윤을 현행 9%에서 10%로 상향조정하여 일반종량제 봉투의 판매이윤과 동일
- 삭제된 조문을 인용한 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건물 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세부 기준 마련(안 제12조제1호, 제15조제4항제4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김형곤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구체화하고(안 제13조 및 별표 1),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주체를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15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 구체화(안 제12조 및 별표 1)
 - 안 제12조 및 별표 1의 개정 사항은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을 정비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상이하여 시민 불편을 야기하던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2020. 3. 자치구 의견조회 완료)”을 마련하여 서울시 각 자치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
-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는 지자체별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달라 불편을 초래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음에도 지금까지 조례 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부서 설명이 요구됨.

○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쉽고 명확한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구민 실생활에 밀접한 사항에 대한 입법 조치를 다소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의가 요구됨.

□ 소형음식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주체 변경(안 제15조)

○ 현행 조례는 소형음식점의 경우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소형음식점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지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청결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형음식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주체를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청장 직접 관리를 통해 얻게 되는 도시미관·약취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구의 재정적·행정적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인 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하여 관내 소형음식점 수, 소요 예산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납부필증) 판매 이윤 “9%→10%” 조정(안 별표 2)

○ 안 별표 2의 개정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납부필증)의 판매이윤을 현행 “판매가격의 9%” 에서 “판매가격의 10%” 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사유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이윤 조정 시 일정 부분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잘못된 인용 사항 정비(안 제12조제1호 및 제15조제4항제4호)

- 안 제12조제1호 및 제15조제4항제4호의 개정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던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 그런데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인용하고 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는 2014. 12. 30.에 삭제되었고, 현행 조례 제15조제4항제4호에서 인용하던 “제9조제6항” 은 2016. 12. 20. 삭제되었음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인용 상태가 정비되지 않았는바, 자치법규가 법 현실에 맞게 적시에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해 보임.

현 행	개 정 안	참 고
제12조(수수료 지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u>수급권자</u>	제12조(수수료 지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u>수급권자</u>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u>제5조 삭제<2014. 12. 30.></u>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④ (생략) 4. <u>제9조제6항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공동으로 배출·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u>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④ (생략) 4. <u>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u>	제9조 <u>⑥ <삭제 2019.12.20.></u>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57호

제안일자 : 2025.8.29.

제안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별표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납부필증)의 판매이윤을 현행대로 유지하
고자 함(안 별표 2)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2 제2호 중 “10%”를 “9%”로 한다.

수정안 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2]</p> <p>2.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에 포함되며, 전용봉투(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의 <u>9%</u> 이내로 정한다.</p>	<p>[별표 2]</p> <p>2.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에 포함되며, 전용봉투(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의 <u>10%</u> 이내로 정한다.</p>	<p>[별표 2]</p> <p>2.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에 포함되며, 전용봉투(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의 <u>9%</u> 이내로 정한다.</p>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제13조제1항 중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분리배출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공동주택지역”을 “공동주택지역 및 소형음식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

재활용 불가능 품목(일반쓰레기로 배출)

구 분	일반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 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행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수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p> <p>2. · 3. (생략)</p>	<p>제12조(수수료 지원) ----- -----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u>재활용 가능한 품목</u> 및 배출요령은 별표 1로 정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 ----- <u>분리배출기준</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p> <p>1. 아파트, 연립주택 등 <u>공동주택지역</u>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p>	<p>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 <u>공동주택지역 및 소형음식점</u>----- -----</p>

출량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2. (생략)

3.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배출량을 고려하여 배출자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제9조제6항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공동으로 배출·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

2. (현행과 같음)

3. 다량배출사업장-----

-----.

4.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종류</th> <th style="width: 30%;">품목</th> <th style="width: 60%;">배출요령</th> </tr> </thead> <tbody> <tr> <td>음식물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td> </tr> </tbody> </table>	종류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p>[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제13조 관련)</p> <p><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불가능 품목 (일반쓰레기로 배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90%;">일반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채소류</td> <td>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td> </tr> <tr> <td>고추씨 등</td> </tr> <tr> <td>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td> </tr> <tr> <td rowspan="2">과일류</td> <td>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td> </tr> <tr> <td>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td> </tr> <tr> <td>곡류</td> <td>왕겨</td> </tr> <tr> <td>육류</td> <td>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td> </tr> <tr> <td rowspan="3">어패류</td> <td>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td> </tr> <tr> <td>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td> </tr> <tr> <td>생선뼈</td> </tr> <tr> <td rowspan="2">알껍질</td> <td>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td> </tr> <tr> <td>찌꺼기</td> <td>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td> </tr> <tr> <td>기타</td> <td>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td> </tr> </tbody> </table> <p>※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p> <p><input type="checkbox"/>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중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행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과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구분	일반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과일류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종류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구분	일반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과일류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7
----------	-----

발의연월일: 2025. 8. 14.

발 의 자: 김형곤·복진경·이성수·
강을석·윤석민·이도희·
이동호·김진경 의원
(이상 8인)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을 구체화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소형 음식점(연면적 200㎡ 미만)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청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판매 이윤’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 이윤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통일된 종량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라.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올바른 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배출요령 권고안 적용(안 제13조 제1항)
- 나. ‘소형음식점’에 대한 기준을 공동주택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
(안 제15조제4항)
- 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포함) 판매소 이윤을 현행 9%에서 10%로 상향조정하여 일반종량제 봉투의 판매이윤과 동일
- 라. 삭제된 조문을 인용한 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건물 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세부 기준 마련(안 제12조제1호, 제15조제4항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제13조제1항 중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분리배출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공동주택지역”을 “공동주택지역 및 소형음식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중 “9%”를 “1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

재활용 불가능 품목(일반쓰레기로 배출)

구 분	일반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과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수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p> <p>2. 3. (생략)</p>	<p>제12조(수수료 지원) ----- -----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p> <p>2. 3.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u>재활용 가능한 품목</u> 및 배출요령은 별표 1로 정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 ----- 음식물류 폐기물의 <u>분리배출기준</u> 및 배출요령은-----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p> <p>1. 아파트, 연립주택 등 <u>공동주택지역</u>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p>	<p>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 <u>공동주택지역 및 소형음식점</u>-----</p>

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2. (생략)

3.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배출량을 고려하여 배출자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제9조제6항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공동으로 배출·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

2. (현행과 같음)

3.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

4.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종류</th> <th style="width: 30%;">품목</th> <th style="width: 60%;">배출요령</th> </tr> </thead> <tbody> <tr> <td>음식물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 찌꺼기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td> </tr> </tbody> </table>		종류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p>[별표 1]</p> <p>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 (제13조 관련)</p> <p><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불가능 품목 (일반쓰레기로 배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th> <th style="width: 90%;">분</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일반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td> </tr> <tr> <td rowspan="3">채소류</td> <td>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td> </tr> <tr> <td>고추씨 등</td> </tr> <tr> <td>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td> </tr> <tr> <td rowspan="2">과일류</td> <td>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td> </tr> <tr> <td>호두·밤·밤껍질·망고·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td> </tr> <tr> <td>곡류</td> <td>왕겨</td> </tr> <tr> <td>육류</td> <td>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td> </tr> <tr> <td rowspan="3">어패류</td> <td>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td> </tr> <tr> <td>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td> </tr> <tr> <td>생선뼈</td> </tr> <tr> <td>알껍질</td> <td>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td> </tr> <tr> <td>찌꺼기</td> <td>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td> </tr> <tr> <td>기타</td> <td>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낱,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품, 플라스틱, 고무장갑, 석불이, 손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td> </tr> </tbody> </table> <p>※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p> <p><input type="checkbox"/>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중량기 등) 또는 음식물 중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행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구	분		일반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과일류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호두·밤·밤껍질·망고·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낱,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품, 플라스틱, 고무장갑, 석불이, 손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종류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구	분																																		
	일반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과일류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호두·밤·밤껍질·망고·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낱,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품, 플라스틱, 고무장갑, 석불이, 손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p>[별표 2]</p> <p>2.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에 포함되며, 전용봉투(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의 <u>9%</u> 이내로 정한다.</p>		<p>[별표 2]</p> <p>2.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에 포함되며, 전용봉투(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의 <u>10%</u> 이내로 정한다.</p>																																	